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 (의안번호 제71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서산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〉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71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❍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(서산문화복지센터, 성연청소년문화의집, 해미청소년문화의집)의 위탁기간이 2026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 해당 시설의 위탁을 재계약 및 갱신하여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8조(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)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위탁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서산문화복지센터, 해미청소년문화의집, 성연청소년문화의집(3개소)

- 수 탁 자 : (재)서산시복지재단 (이사장 김원균)

- 위탁시설현황

구 분	서산문화복지센터	해미청소년문화의집	성연청소년문화의집
위 치	서령로 136(동문동)	성지3길 33(해미면)	성연5로 92-33(성연면)
개관일	2012. 12. 07.	2006. 04. 07.	2024. 12. 14.
직원수 (정원)	27명	6명	9명
위탁기간	24.1.1.~ 26.12.31.		24.3.13.~ 26.12.31.
시설 면적	대지 24,618㎡ / 건평 6,928.9㎡ A동(지하1~지상2), B동(지상3층)	대지 1,626㎡ / 건평 1,122㎡ 지상4층	대지 3,846.7㎡/ 연면적1,435.79㎡ 지하1층 ~ 지상3층
2026 예산 (위탁금)	2,410,180천원	539,996천원	846,298천원

※ 청소년카페: 2027년 초록광장 내 신규 청소년카페 조성 예정, 서산문화복지센터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

○ 위탁추진계획

- 위탁사무 :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

- 위탁기간 : 2027. 1. 1 ~ 2029. 12. 31.(3년)

- 위탁방법 : 재계약 및 갱신

- 선정방법 : 성과평가 및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

○ 위탁사무내용

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

-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- 청소년 참여활동 및 자치활동 지원

- 청소년카페 운영 및 관리 ※ 신규 청소년카페 포함(초록광장 내)
-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
- 시설 대관 및 이용관리
-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

❍ 수탁자 선정방법

- 심의방법 :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서면심의
- 심 의 일 : 2026. 9. 21. ~ 10. 6
- 심의결과

위탁 시설명	법인명	평 점	비 고
서산문화복지센터	(재)서산시복지재단	95.7	
해미청소년문화의집	(재)서산시복지재단	94	
성연청소년문화의집	(재)서산시복지재단	93	

※ 최고,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산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

Ⅲ. 검토의견

1. 제안목적

○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(재)서산복지재단의 운영실적 및 전문성등을 평가하여 향후 3년간 시설 운영을 계속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근거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「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서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
- 「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서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3년 이내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《청소년활동 진흥법 》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《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》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

되,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《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》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.

나. 민간 위탁 사무의 적정성

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시설관리 및 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사무 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있음

-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·시설 관리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, 청소년 참여·자치활동 지원,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능력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임

-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, 자치활

동, 동아리 및 문화 활동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므로,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》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
제5조(위탁 대상사무)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· **청소년**·노숙인 등 **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**

나.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

- 「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
- 같은법 제13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「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6조 4항에서는 수

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2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음을 규정함

- 「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「서산시 사무의 위탁기본 조례」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
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제28조에 의거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인 서산문화복지센터, 해미청소년문화의집, 성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후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게시함

【참고자료 1】

《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》

제5조(사업)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5.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

제13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《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》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

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.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》

제18조(위탁기관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

제28조(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)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【참고자료 1: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】

시 설 명	수 탁 기 관	평가점수(총점)	위 탁 기 간
서산문화복지센터	(재)서산시복지재단	94.4	2024. 1. 1. ~ 2026. 12. 31.
해미청소년문화의집	(재)서산시복지재단	94.4	
성연청소년문화의집	(재)서산시복지재단	93.4	2024. 3. 13. ~ 2026. 12. 31.

Ⅲ. 종합검토

가. 본 동의안은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

나.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「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「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

다.「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
라.「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도 수탁자의 성과를 평가한 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바.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, 자치활동, 동아리 및 문화 활동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므로,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

사. 또한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3곳의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 **【참고자료 1】**

아.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